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법9조1항7호)

• 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5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국	과		
공통사항	공통사항	각종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군수관리관실	국제군수협력과	수송분야 중기계획 검토	5년간 전력증강계획 및 부대개편, 현존전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군사력규모 노출로 인한 국익 저해
군사시설 기획관실	건설관리과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이 법인, 단체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이며, 사업계획이 고시 이전에는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사전 공개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국유재산과	처분 관련 민원업무	권리분쟁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일부 비공개)